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903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2. 18.

김석한 의원 등 5인

나. 회 부 일 자: 2025. 2. 25.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2025. 3. 18.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김원순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현금 지급방식을 수당 지원사업의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여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며, 현재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 의결 후에는 자동 해산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운영에서 임시 운영으로 변경(안 제5조)
- 심의위원회 임시 운영에 따른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6조 및 제7조)
- 심의위원회 임시 운영에 따른 위원회 운영 간소화(안 제9조)
- 고성군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당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수당의 현금 지급방식을 군의 여건에 따라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입법예고: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8호
 - 예고기간: 2025. 2. 18.(화) ~ 2025. 2. 24.(월)[6일간]
 -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요지(전문위원 조정제)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수당의 지급방식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현행 상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사안 발생시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개정함.

- (안 제6조 ~ 제7조,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 위원회의 회의

- 안 제5조의 임시 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조문의 내용 중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의 위원회 소집요구 등의 내용을 정비(삭제)함.

- (안 제11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 농어업인수당을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성군에서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경상남도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확대)하고, 군의 여건에 따라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종합검토 의견

- 본 안건은 농어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당지급 방안 확대 및 임시 위원회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당 지급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5. 토 론: 없음

6. 심사결과: 2025. 3. 18.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